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 상한 인상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6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 상한 인상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 기관 의견	10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5. 7. 18.
- (3) 회 부 일 : 2025. 7.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이 지원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29만 4천명이며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 대다수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1%로 전 국민 73.3% 대비 크게 낮으며,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한계가 있음.

또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 넘게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구,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인 농어업인 수는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가사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 상한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되, 농어업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 ----- ----- ----- --80의-----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 ----- ----- ----- ----- -----

현행	개정안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u>50</u> 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80의-----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50”을 “80”으로 한다.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¹⁾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²⁾의 한시적 특례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³⁾,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⁴⁾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⁵⁾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 참고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일몰 시점을 정하고 있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가 2014년, 2020년 및 2024년에 각각 개정되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2031년 12월 31일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임.

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2)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 현행법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그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103만원 × 9% × 50%)이 정액으로 지원되는데,⁶⁾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월평균 27만 9천명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총 1,49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결산	'25예산
기준소득금액(천원)	1,000		1,030		
총 사업비(억원)	1,687	1,743	1,696	1,493	1,483
월평균 지원 대상자(천명)	326	311	294	279	275 (추정)

자료: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6)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0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30천원으로 한다.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되,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비율 상한을 높이게 되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연금보험료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2025년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부터 13%가 되므로,

이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의 상한을 상향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수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최근 10년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전까지는 3~4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주식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6~7조원대까지 증가하여 동 사업의 재원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⁷⁾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농가 및 농가인구(2020~2024년) >

(단위: 천 가구, 천명, %, %p)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
농 가	1,035	1,031	1,023	999	974	△25.3	△2.5
농가 비율 ^주	5.0	4.8	4.7	4.6	4.4	△0.2	-
농가인구	2,314	2,215	2,166	2,089	2,004	△85.3	△4.1
남 자	1,153	1,100	1,069	1,025	979	△45.7	△4.5
여 자	1,161	1,115	1,096	1,064	1,025	△39.5	△3.7
농가인구 비율 ^주	4.5	4.3	4.2	4.0	3.9	△0.2	-

주: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농가 및 농가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림어업조사

< 어가 및 어가인구(2020~2024년) >

(단위: 천 가구, 천명, %, %p)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
어 가	43.1	43.3	42.5	41.8	40.9	△0.9	△2.1
어가 비율 ^주	0.2	0.2	0.2	0.2	0.2	-	-
어가인구	97.1	93.8	90.8	87.1	84.0	△3.2	△3.6
남 자	49.7	47.1	45.6	43.7	42.1	△1.7	△3.8
여 자	47.3	46.7	45.2	43.4	41.9	△1.5	△3.5
어가인구 비율 ^주	0.2	0.2	0.2	0.2	0.2	-	-

주: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어가 및 어가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림어업조사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 최근 10년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16년 결산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결산	'25년 예산
징수액	36,370	38,388	44,217	39,211	62,602	89,000	70,131	65,628	70,249	74,153
(4개년 평균) 3조 9,547억원					(5개년 평균) 7조 1,522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10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현행 지원비율(50%) 대비 같은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약 78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명, 원,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개정안(80%)에 따른 재정소요(A)	2,234	2,173	2,108	2,040	1,971	10,526	2,105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801	778	753	728	702	3,763	753
월평균대상자	85,255	78,655	72,566	66,949	61,766	-	-
지원단가(월)	78,280	82,400	86,520	90,640	94,760	-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1,433	1,395	1,354	1,312	1,269	6,763	1,353
월평균대상자	160,995	147,968	135,996	124,992	114,878	-	-
지원단가(월)	74,180	78,563	82,997	87,483	92,020	-	-
현행 50% 적용 시 재정소요(B)	1,396	1,358	1,317	1,275	1,232	6,579	1,316
추가재정소요 (A-B)	838	815	790	765	739	3,947	7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한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6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농어업인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타 취약계층 지원 수준*과의 형평성 및 추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저소득 지역가입자(50%, 12개월간), 저소득 사업장가입자(80%, 36개월간) 등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